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524호 2020. 6. 29(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72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 ----- 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74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7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76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1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 2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 3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3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0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과 [032-560-4146]**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4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 5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85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6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6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8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6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6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8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7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9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9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 ---- 9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9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6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 9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95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 9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9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02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 103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9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110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94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123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95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125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 14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 15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폐지 고시 ---------- 15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5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9호 도시관리계획(인천가정 공동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8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0호 도시관리계획(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6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2-1호선외2개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 19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22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 19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0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5명”을 “1,25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75명”을 “1,233명”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4% 이내	29% 이내	5% 이상

*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3%이내	97%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	34% 이내	33% 이상	33% 이상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1,25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48	-				
2급	1	1				
4급	7	5	1	1		
5급	71	39	2	7	1	22
6급 이하 계	1,169	-				
연구직 계	1					
연구사	1	-				
별정직 계	3	-				
6급 상당 이하 계	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72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등·조직”을 “설치 등 조직”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획예산실”을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기획예산실”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에코시티 총괄 사무

2. 건축 및 도시·디자인관련 정책 수립(총괄건축가)

3.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제6조제1항 중 “재무과”를 “공동체협치과, 재무과”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0호부터 제92호까지, 제96호, 제98호부터 제105호까지, 제107호, 제109호, 제112호부터 제120호까지 및 제12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26호부터 제1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6.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사무

127.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

128.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2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30.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제7조의2제1항 중 “위생과를 둔다”를 “공원녹지과, 위생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85호부터 제8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5. 공원조성 및 관리

86. 산림보호 육성

87. 녹지 설치 및 관리

88. 도시녹화사업 추진

89. 공유재산 중 임야의 관리

제7조의3제1항 중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일자리과”를 “기업지원일자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원녹지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5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9호부터 제9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9. 지적공부 유지관리

70.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71. 지적민원 처리

72. 부담금 납부의 독촉 및 체납처분

73.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74. 외국인 토지관리(취득・허가 신고 등)

75.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76. 지가의 결정, 지가의 공개 및 열람

77. 부동산 검인

78.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제공

79.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

80. 부동산 실명제 운영

81.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82.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83.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부과・징수

84. 개발이익환수금 과태료 부과・징수

8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8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87. 도로명주소 사업 총괄

88.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위원회 포함)

89.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90. 토지이용계획 도면 관리

91.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

92. 공간정보(GIS)운영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 무 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다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세 무 1 과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과세증명서 나.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노인복지과	1	매·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장애인복지과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가정보육과	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저소득한부모가정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나. 저소득 한부모가정 일제조사 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지원, 변동사항 확인 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변동사항 관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자원순환과	1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권한 가. 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나. 봉투판매소 변경사항 신고		
	2	동 배치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3	이면도로 청소업무	-폐기물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	
	4	주택가 무단투기 단속업무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동 조례 제9조의 3, 동 조례 제17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74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행위일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조사시”를 “조사 시”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7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당 동 주민이면”을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립·시행하는”을 “수립하는”으로, “민관협력”을 “민관 협력”으로 한다.

제5조 중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

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업무에 대한 협의”를 “업무”로 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19세 이상의”를 “만 18세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을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단체의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노력”을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내는 공개모집”을 “공개모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내는 해당”을 “해당”으로, “각 급”을 “각급”으로, “주민공동조직, 통장연합회”를 “주민공동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민자치회는”을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으로,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를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를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고,”로,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를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 포스 팀”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서구형 주민자치회 모델 발굴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 포스 팀을 둘 수 있다.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시범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운

영한다.

제4조(유효기간) ①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② 단, 시범실시 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제도도입 시행 이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76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인천5.3항쟁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

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 사업
3.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4. 민주구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 ·학술 및 문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관리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한 이용자 안내표지판에 별표 1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차량
2. 공무수행 관용차량(관용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 공적인 업무(구 주관 공식 행사, 회의 등)로 구청을 방문한 차량.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를 할 경우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를 발급받은 차량 또는 미리 관리자에게 공식

적인 공문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차량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구의원 차량

5. 언론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6.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를 발급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1구획당)은 아래와 같이 한다.

기본 (최초 1시간 이내)	기본초과 최초 30분까지	이후 매 15분당	1일 최대요금 (5시간 이상 주차)
무료	600원	300원	6,00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해당 사유의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3. 자가용승용차 부제 운행 참여 차량 : 50퍼센트 감면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정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③ 상시 출입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월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월 정기주차요금은 1구획당 2만원으로 한다. 다만, 관리자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월 정기주차요금 계약 시 최초 계약월은 잔여일수로 주차요금을 일할 산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관리자는 제5조에 따라 번호판인식시스템에 계산된 주차요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7조(징수요금의 관리)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시스템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다음날 업무개시 즉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구금고에 납입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납입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주차장 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4일

이상 장기주차 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강제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 안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함.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함.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제11조(주차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시 출입 직원의 차량 및 관용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의 원활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청사 이용 등 공익목적을 위해 상시 출입 직원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상시 출입 직원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하거나 금

지할 때에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제5조제3항에 따른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정기주차요금의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보전한다.

④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할 때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려고 할 때

제12조(감독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변경
2. 조례에 명기된 내용 및 서식의 변경
3. 그 밖에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③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차장 이용 안내판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징수시간 : 평일 09:00~19: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주차장은 24시간 운영

2. 주차요금

기본 (최초 1시간 이내)	기본초과 최초 30분까지	이후 매 15분당	1일 최대요금 (5시간 이상 주차)
무료	600원	300원	6,000원

○ 경형 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및 이륜자동차는 60%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6급) 차량, 자가용승용차 부제 운행 참여 차량,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50% 감면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의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3. 요금 선납
○ 주차요금 징수시간 종료 2시간 이내 주차하는 차량

4. 특별한 사유 없이 4일 이상 장기주차하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2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주차장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별지 제1호서식)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	
No. 부서명 -	
차 량 번 호	
성 명	
민 원 내 용	
민원처리시간	
담 당 자	과(단,실,관) 팀 직급 성명
확 인 자	과(단,실,관) 직위 성명 (인)
※ 상기 내용, 담당자 기재 및 확인자 ***날인***이 없을 경우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발급 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보 관 용 】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	
No. 부서명 -	
차 량 번 호	
성 명	
민 원 내 용	
민원처리시간	
담 당 자	과(단,실,관) 팀 직급 성명
확 인 자	과(단,실,관) 직위 성명 (인)
※ 상기 내용, 담당자 기재 및 확인자 ***날인***이 없을 경우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발급 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민원인 발급용 】

(별지 제2호서식)

발 급 대 장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

연번	일 자	차 량 번 호	초과시간	사 유	확인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30명”을 “20명”으로 한다.

제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시설점검 및 시험운영 등을 목적으로 초청된 사람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다음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

만 적용한다.

1.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카.「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구청장은 썰매장 시설 운영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3명 이상 가족 동시 입장 시(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공기관(학원 포함)과 기업체 등에서 20명 이상 일시 이용 시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 용 료 (제3조 관련)

시설명	기 준	요 금	비 고
사계절썰매장 (야외풀장포함)	어 른	6,000원	1회 입장 기 준
	청소년	4,000원	
	어린이	4,00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를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

3.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사업

4.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제3조제1항 단서 중 “위탁운영하게”를 “위탁하여 운영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위탁 운영하는”을 각각 “위탁하여 운영하려는”으로 한다.

제3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한다.”를 각각 “함”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1조의2 관련)

명 칭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21번길 10(석남동)
인천광역시 서구가좌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87(가좌동)
인천광역시 서구연희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63(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검단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1(마전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

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하여 자료구입, 시설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를 삭제하고, “경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3. 운영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실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

⑤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와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성별이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실시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

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가.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나. 대중교통의 접근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2.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임산부·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2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폭력・위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3. 폭력예방 및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물 등의 개선・확충

제13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여성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제16조(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안·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협의·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

록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회 의원 2명

2. 여성정책,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여성단체, 종교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1년 이상 활동 경험과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단, 공모로 모집한다.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금품·향응 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제1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제안·협의·조정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 성・관리한다.

제2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제26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2.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참여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관련 구민 의견수렴 및 홍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7조(구성 및 임기) ① 구민참여단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민참여단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마.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바.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사.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4조(지원방법)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 등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급식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제

출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등)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 등을 신청자 및 아동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구의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 대행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방학기간 전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의진행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에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그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급식업체는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업체가 아동급식 지원예산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85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설 대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허가 우선순위) 검단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이상 경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

2.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의2(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술에 취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자

3. 검단복지회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제9조제4항 본문 중 “13세”를 “12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⑦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3. 구 산하기관 또는 청라복합문화센터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 및 경기

4.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구가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

제15조제1항제2호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을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④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⑤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8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행사”를 “행사 및 경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체육진흥을 위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3. 구 산하기관 또는 국민체육센터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4.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구가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

제12조제5항 중 “13세”를 “12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행사”를 “행사 및 경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배드민턴연합회”를 “배드민턴연합회가 주최하는 경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육진흥을 위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4.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구가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

3. 구 체육회 및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8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

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 10”을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으로 하고,같은 항 단서 및 제3항 중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을 각각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운영)”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토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4조의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구민의 의무) 구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규격봉투 외에 별도로 지정된 폐기물봉투”를 “가정사업계용봉투”로,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운반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를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을 “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제7조에 따라”를 “제7조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단서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만료일로”를 “만료일”로 한다.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생활쓰레기중”을 “생활쓰레기 중”으로, “담아야 한다.”를 “담는 봉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생활쓰레기중”을 “생활쓰레기 중”으로, “담아야 한다.”를 “담는 봉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생활쓰레기중”을 “생활쓰레기 중”으로, “담아야 한다.”를 “담는 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사업계용봉투는”을 “가정사업계용봉투:”로 “담아야 한다.”를 “담는 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아야 한다.”를 “담는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일반용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제11조제2항 중 “별표 10”을 “별표 5”로, “고유번호등”을 “고유번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1부터 별표 6-5까지로 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제작규격은 별표 7과 같다.

제12조제2항 중 “별표 6”을 “별표 8”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별표 10”을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별표 7”을 각각 “별표 9”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공급할”을 “제공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례의 규정에”를 “조례를”로 한다.

제16조 단서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6조의2 단서 중 “휴지등”을 “휴지 등”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7조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까지의”로, “따르며, 이에 대

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별표 10을 삭제하고,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조, 제13조 관련)

품명	규격	수수료(원)
가스(오븐)렌지	1M 미만	2,000
	1M 이상	4,000
거울	반신거울(소)	2,000
	전신거울(대)	5,000
다리미판	모든 규격	2,000
돗자리	모든 규격	5,000
문갑(거실장)	모든 규격	6,000
문짝	목재	4,000
	철재	5,000
문틀	소	3,000
	대	5,000
바둑판	소(얇은 판)	1,000
	대(두꺼운 판)	2,000
밥상	대(1.2m 이하),4인용 미만	3,000
	대(1.2m 이상),4인용 이상	4,000
방충망	소(창문)	3,000
	대(문)	4,000
변기	모든 규격	5,000
병풍	모든 규격	5,000
빨래건조대, 행거(옷걸이)	모든 규격	3,000
서랍장	5단 미만	6,000
	5단 이상(3단양수 포함)	8,000
세면기	모든 규격	5,000
소파	1인용	5,000
	2인용	6,000
	3인용	10,000
	4인용 이상	11,000
	테이블	3,000
수납장	다용도 수납장	4,000
스탠드 벽시계	일반	5,000
식탁	6인용 미만(의자 별도)	6,000
	6인용 이상(의자 별도)	7,000
신발장	소(1.5m 미만)	3,000
	대(1.5m 이상)	6,000
쌀통	일반	3,000
	다용도	4,000
씽크대(씽크대찬장 포함)	대(1m 미만)	4,000
	대(1m 이상)	6,000
아이스박스	소(길이 50cm 미만)	2,000
	중(길이 1m 미만)	3,000
	대(길이 1m 이상)	5,000
액자	소(대각선 0.5m 미만)	2,000
	중(대각선 0.5~1.5m)	3,000
	대(대각선 1m 초과)	5,000
여행용 가방	소(기내용)	3,000
	대(화물용)	5,000

품명	규격	수수료(원)
오락기	일반	10,000
오르간	모든 규격	6,000
옥돌 자석매트(자석요)	모든 규격	11,000
욕조	모든 규격	10,000
유리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유모차(보행기)	모든 규격	3,000
의자	모든 규격	4,000
자동판매기	소(1m미만)	6,000
	대(입식 1m 이상)	10,000
자전거	소(어린이용)	4,000
	대(일반 어른용)	5,000
장롱	1쪽3자 0.9m 미만	8,000
	1쪽(3자)0.9~1.2m	10,000
	1쪽(4자)1.2m 이상	11,000
장식장(차단스)	소	4,000
	중	6,000
	대	8,000
장판	5m 미만	4,000
	5m 이상	5,000
재봉틀	소	3,000
	대	5,000
전기장판	모든 규격	6,000
책상	상판	3,000
	컴퓨터 책상	5,000
	편수(외서랍,무서랍)	6,000
	양수(양서랍)	7,000
책장(책꽂이)	소(3단 이하)	5,000
	대(3단 이상)	6,000
침대(매트리스)	1인용	8,000
	2인용	9,000
	유아용 침대	3,000
침대머리	모든 규격	3,000
침대틀	1인용	3,000
	2인용(퀸사이즈 포함)	4,000
	돌침대(돌 포함)	12,000
	유아용 침대	5,000
카펫트	소(길이1.5m 미만)	5,000
	중(길이2.5m 미만)	7,000
	대(길이2.5m 이상)	12,000
탁자	10인용 미만	5,000
	10인용 이상	9,000
피아노	일반(얼라이트)	11,000
	대형(그랜드)	12,000
항아리(화분)	소(40cm 미만)	3,000
	중(70cm 미만)	4,000
	대(70cm 초과)	5,000
협탁	모든 규격	2,000
화장대	모든 규격	6,000
TV/오디오받침대	모든 규격	3,000

※ 상기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별표 2]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제2조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연번	품 명	규 격
1	가 습 기	모든 규격	17	전 화 기	모든 규격
2	오디오셋트	높이 1m미만	18	전기밥솥	모든 규격
3	카세트라디오	모든 규격	19	보온밥통(솥)	모든 규격
4	다 리 미	모든 규격	20	녹즙(믹서)기	모든 규격
5	선 풍 기	모든 규격	21	토스터기	모든 규격
6	탈 수 기	모든 규격	22	<삭 제>	<삭 제>
7	공기청정기	높이 1m미만	23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모든 규격
8	청 소 기	모든 규격	24	컴퓨터오락기	모든 규격
9	정 수 기	높이 1m미만	25	노트북컴퓨터	모든 규격
10	전자렌지	모든 규격	26	모 뎀	모든 규격
11	전기오븐렌지	높이 1m미만	27	TM 캐 너	모든 규격
12	헤어드라이기	모든 규격	28	프린터기	모든 규격
13	에어컨실외기	모든 규격	29	복 합 기	모든 규격
14	<삭 제>	<삭 제>	30	팩시밀리	모든 규격
15	전기히터	모든 규격	31	시계 (전기 및 건전지 사용)	모든 규격
16	VTR/DVD	모든 규격			

[별표 3]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팩,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종이컵, 팩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 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	○ 음료수병, 기타 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농약병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 ~PET병, 합성수지 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 폐스치로폴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이물질 및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컵라면 용기, 1회용 용기,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것은 제외

[별표 4]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제10조 관련)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종 류
5	26×46.5	일반용봉투(가연성)
10	33×56.5 36×53.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20	42×69.5 45×65.3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30	48×78.5	가정사업계용봉투
50	56×91.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공공용봉투
60	50×97	가정사업계용봉투
100	71×113.5	일반용봉투(가연성) 공공용봉투
125	80×120	가정사업계용봉투

※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 봉투제작 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 = \frac{\text{가로길이(㎝)}}{\pi} + 5\text{㎝}$$

[별표 5]

생분해성수지 함량표시(예) (제11조제2항 관련)

폴리에틸렌(PE)	전 분	지방족폴리에스테르
65%	15±2%	20±2%

[별표 6-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ℓ, ○○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50ℓ, 100ℓ에만 표기)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폐종이류, 나무조각류, 상품포장재 등 가연성(불에 타는)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에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또는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50ℓ:13kg이하, 100ℓ:25kg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24:00)에 배출하시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투입구에 배출하십시오.
4.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

서구 시설관리공단(☎ ○○○-○○○○)

△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6-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용 -

1.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패각류, 폐전구, 깨진 그릇 등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불연성 쓰레기를 버릴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24:00)에 배출하십시오.
4.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

서구 시설관리공단(☎ ○○○-○○○○)

△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6-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가정사업계용 -

1. 이 봉투는 ○ ○ ○ 또는 ○ ○ ○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처리대상 쓰레기(가정에서 발생된 사업계 쓰레기 중 가연성쓰레기): 고무, 피혁, 섬유, 폐도배지, 양탄자, 보온재, 폐목재, 오니류 등
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에 버리지 않는 경우 일체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4.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
서구 시설관리공단(☎ ○○○-○○○○)

△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6-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재사용 종량제봉투(ℓ) -

1. 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종량제봉투(불에 타는 쓰레기용)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2.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
서구 시설관리공단(☎ ○○○-○○○○)

△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6-5]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공공용 쓰레기봉투(ℓ)

1.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자원순환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

서구 시설관리공단(☎ ○○○-○○○○)

△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7]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제11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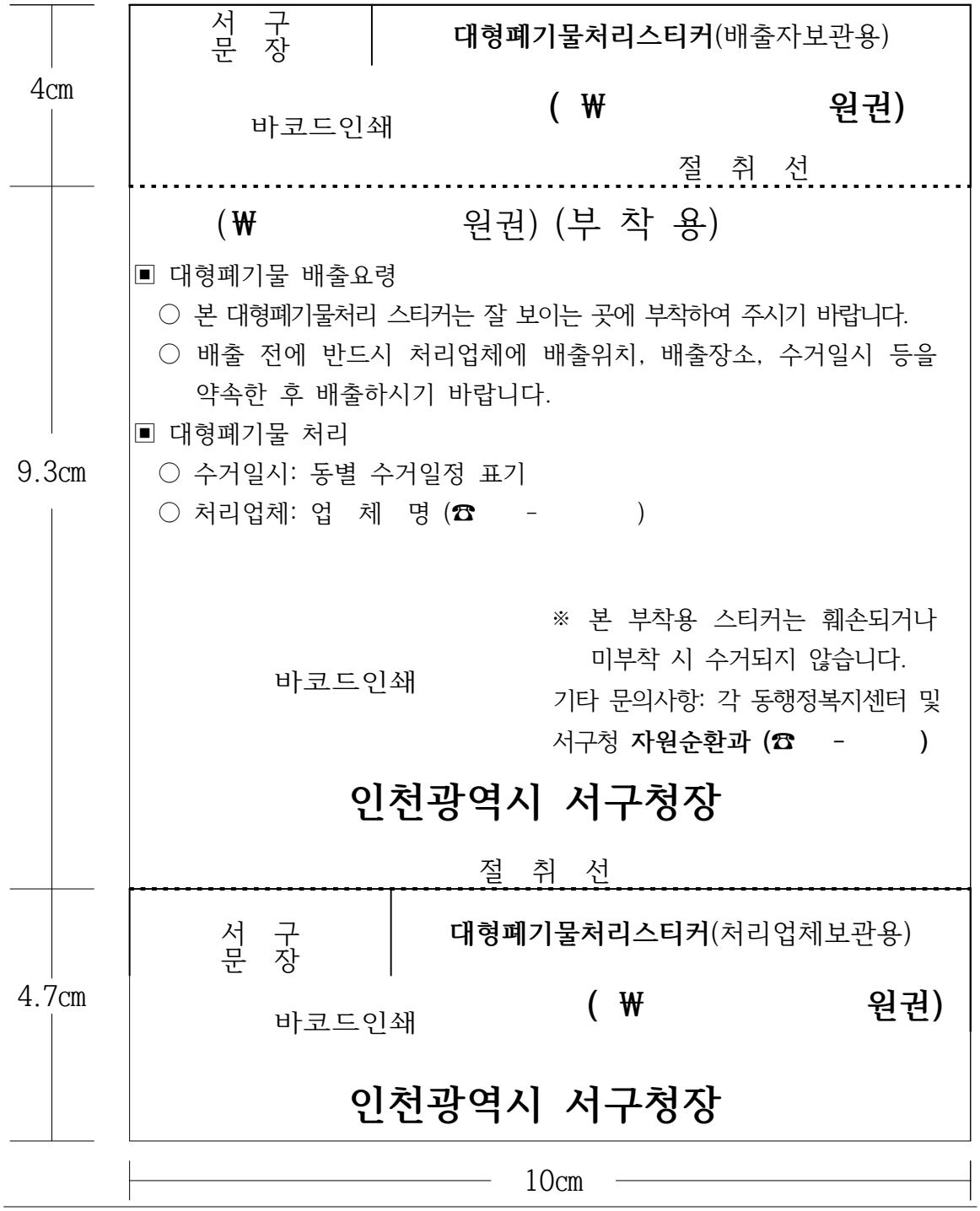

※ 종류는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4종으로 1,000원권은 파랑색 바탕에 흰글씨, 3,000원권은 초록색 바탕에 흰글씨, 5,000원권은 주황색 바탕에 흰글씨, 10,000원권은 붉은색 바탕에 흰글씨로 한다.

[별표 8]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제12조제2항 관련)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고딕으로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137), 녹색(DIC: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579), 녹색(DIC: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9]

일반용봉투가격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봉투가격 = {봉투단가(ℓ당) × 봉투규격(ℓ당) + 봉투제작비} × 수수료자립도(0.45~1) + 판매수수료
①③⑤②④

[주]

㉮㉯㉰

① 봉투단가(ℓ당) = 수집·운반·처리비(원) ÷ 년간처리량(톤) ÷ 부피환산계수(2.500)

㉮ 수집·운반·처리비(원) = 전년도 1월～10월 비용 + 11월～12월 예상비용
· 기준년도 : 봉투가격 적용년도(T)의 전년도(T-1)
· 수집·운반·처리비 내역 :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또는 직영비, 매립지 반입료, 적환장, 재활용선별 창고등 각종 대행료, 봉투제작비 등

㉯ 년간 처리량 :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 매립지 반입량 :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

㉰ 부피환산 계수 : 무게단위(톤)를 부피단위(ℓ)로 환산하기 위한 산식
※ 근거 : 환경부 폐정67501-696(94. 9. 8)호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93쪽의 폐기물학회보고서 93. 1)

② 수수료 자립도(0.45～1)
④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판매수수료 요율÷(1- 판매수수료 요율)}
⑤ 봉투제작비 = 폐기물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 판매수수료, 봉투제작비의 소숫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단위로 반올림 한다.

가정사업계용 봉투가격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봉투가격 = 처리단가/kg × 봉투규격 × 0.6 + 봉투제작비

[주]

① 처리단가
○ 정부고시단가 : 225원/kg (발열량3,000kcal ～ 5,000kcal)
② 봉투규격 : 가로 × (세로+묶는 부분) × 두께
③ 통상 무단투기된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시 처리금액의 60%수준으로 정함
④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가격(제13조 관련)

구분		규격	판매가격		
			계	판매수수료	판매소 납품가격
봉투	일반용봉투 (가연성, 불연성)	5ℓ	160원	12원	148원
		10ℓ	310원	25원	285원
		20ℓ	620원	49원	571원
		50ℓ	1,540원	123원	1,417원
		100ℓ	3,070원	245원	2,825원
	가정사업계용 봉투	30ℓ	1,870원	150원	1,720원
		60ℓ	3,710원	290원	3,420원
		125ℓ	7,660원	610원	7,050원
스티커	대형폐기물처리용 스티커	1000원권	1,000원	79원	921원
		3000원권	3,000원	237원	2,763원
		5000원권	5,000원	395원	4,605원
		10000원권	10,000원	790원	9,21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건전한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 및 “점포”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인” 및 “점포”를 말한다.
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

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써,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는 구청장이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30개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상인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의 지원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된 맛고을길 및 검단먹거리타운에 대해서는 이 조례 따라 지정된 음식문화거리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그 밖에 생활임금”을 “생활임금”으로 한다.

2. 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및 하수급인(「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9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할인 등 징수금액을 모두 합산한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4조제2항 중 “주차요금에”를 “주차요금(제5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주차요금)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를 “둘”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중 제6호가목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전단 중 “추가할인할 수 있으며,”를 “할인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구청사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함으로써 인근 공영주차장을 대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95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조례 또는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각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을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제11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가 의장에게 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 집행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3호 중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을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3항 중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9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총 계	1,253	784	20	105	39	305	(9)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1,248	779	20	105	39	305	(9)
2급 소계	1	1					
이 사 관	1	1					
4급 소계	7	5	1	1			
서 기 관	2	1	1				
기 술 서 기 관	2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3	3					
5급 소계	71	39	2	7	1	22	
행 정	14	12	2				
의 무	2			2			
운 전	1	1					
행정·사회복지	4	4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10	10					
행정·사회복지·공업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녹지	3					3	
행정·사회복지·보건	3					3	
행정·사회복지·환경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1	

1 페이지

행정·공업·농업	3	1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2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행정·보건·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6급 소계	298	208	8	22	11	49	
행정	89	72	4	1	1	11	
세무	18	16			2		
전산	1	1					
사회복지	17	17					
속기	2		2				
공업	8	8					
농업	1	1					
녹지	6	5			1		
수의	1	1					
보건	6	5		1			
의료기술	2			2			
간호	1			1			
환경	6	6					
시설	22	20			2		
방송통신	2	2					
운전	5	2	1		1	1	
전화상담운영	1	1					

2 페이지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2	1			1			
행 정 · 세 무	12	9				3		
행 정 · 사 회 복 지	37	10	1			26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농 업	1				1			
행 정 · 녹 지	2	1				1		
행 정 · 보 건	5	2			1	2		
행 정 · 환 경	6	4				2		
행 정 · 시 설	11	11						
행 정 · 방 송 통 신	2	1				1		
사 회 복 지 · 간 호	1			1				
공 업 · 환 경	1	1						
녹 지 · 시 설	1	1						
보 건 · 간 호	1			1				
보 건 · 환 경	1	1						
식 품 위 생 · 간 호	1			1				
의 료 기 술 · 간 호	3			3				
환 경 · 시 설	1	1						
시 설 · 방 재 안 전	1	1						
행 정 · 세 무 · 공 업	1					1		
행 정 · 세 무 · 농 업	1					1		
행 정 · 공 업 · 시 설	2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2			2				
행 정 ·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환 경 · 시 설	1	1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7			7				
식품위생 · 의료기술 · 간호	1			1				
행정 · 녹지 · 환경 · 시설	1	1						
보건 · 의료기술 · 약무 · 간호	1			1				

3 페이지

7급 소계	364	237	4	23	13	87	(1)
행정	137	83	4		2	48	(1)
세무	18	18					
전산	6	6					
사회복지	44	23				21	
공업	10	8			2		
농업	2	1			1		
녹지	8	7			1		
수의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7	11		5	1		
의료기술	4			4			
간호	8			8			
환경	13	13					
시설	55	50			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운전	15	1		1		13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4	1				3	
행정·세무	3	2			1		
행정·사회복지	4	2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3	3					
농업·수의	1	1					
보건·간호	1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8급 소계	303	169	4	44	9	77	(5)
행정	116	70	3	2		41	(5)

4 페이지

세무	9	9					
전산	1	1					
사회복지	51	19		2		30	
공업	7	7					
농업	1	1					
녹지	6	5			1		
보건	7	3		2	2		
의료기술	1			1			
간호	29			29			
환경	13	13					
시설	29	24			5		
방송통신	3	3					
운전	6		1	1		4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7	6				1	
행정·농업	1					1	
행정·간호	1			1			
행정·시설	3	3					
공업·보건	1	1					
공업·환경	1				1		
보건·간호	1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3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9급 소계	204	120	1	8	5	70	(3)
행정	84	42	1	3	2	36	(3)
세무	14	13			1		

5 페이지

사회복지	38	5		1		32	
공업	8	8					
농업	1	1					
녹지	5	3			2		
보건	3	1		2			
의료기술	2			2			
환경	15	15					
시설	20	20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3	3					
운전	2					2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연구직계	1	1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계	3	3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8급 상당소계	1	1					
비서	1	1					
9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6 페이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9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중 “재무과장”을 “공동체협치과장, 재무과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지방보건사무관으로”를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로 한다.

제5조의3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일자리과장”으로, “사회적경제일자

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을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을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실·관·”를 “단·실·담당관·”로 한다.

제12조 중 “보한다”를 “보하며, 동장은 주민자치지원담당관을 겸직한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1.	스마트에코시티 사무 총괄
	2.	스마트에코시티 구상 및 기획
	3.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
	4.	스마트에코시티 위원회 운영
	5.	총괄건축가 업무 지원
	6.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총괄건축가)
	7.	건축 및 도시행정에 대한 전반적 자문
		(가) 건축물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자문
		(나) 각종 개발사업(신도시·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등) 자문
		(다) 공공사업의 건축디자인 통합·조정 지원
		(라) 도시경관 향상 및 공원·녹지조성사업 자문
		(마) 지역 유휴공간 등 발굴 및 개선에 대한 지원
		(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
	8.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가)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추진
		(나)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다) 스마트시티 공모 및 시범사업
		(라)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마) 스카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및 운영
		(바) 스마트시티 관련 민원 처리

1 페이지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건강보험 업무
	4.	방위협의회 운영
	5.	직장복지금고 및 구내식당 운영
	6.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7.	행정공제회 관리
	8.	청사경비 및 방호관리
	9.	직장민방위 및 자체예비군 운영 관리
	10.	의식행사 의전 및 접대에 관한 사항
	11.	민간에 대한 포상 및 표창
	12.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3.	회의실 운영 관리
	14.	구기등에 관한 사무
	15.	공무원 복무 및 휴가
	16.	직원월례조회 및 시무식·종무식
	17.	청내 사무실 조정
	18.	공무원 인사(구소속공무원 임용권)
	19.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20.	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 평정
	21.	공무원 신원조사 의뢰
	22.	공무원증 발급
	23.	소·동 행정지도 감독
	24.	동의 명칭, 위치, 구역의 변경(행정구역 조정)
	25.	시책업무 추진
	26.	공무원 교육
	27.	공무직근로자 관리
	28.	반상회 운영

1페이지

	29.	통·반조직 운영
	30.	여론 및 동향관리
	31.	공무원 표창
	32.	공무원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33.	적십자회비 모금
	34.	단체관리(바르게살기운동)
	3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무
	36.	공무원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37.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38.	행정사 사무 업무
	39.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증명 발급
	40.	선거 및 국민투표
	41.	사무편람 제작 및 지도·점검
	42.	사회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조정
	43.	새마을 단체 및 지도자 관리
	44.	새마을 정신계도 홍보 및 교육
	45.	새마을 장학금 운영
	46.	도시새마을운동 추진
	47.	새마을 시설물 관리·지도
	48.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49.	국민운동 관련 시책 추진
	50.	민간단체보조에 따른 보조금 관리
	51.	해병전우회 관한 사항
	52.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53.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54.	공무직 노조 지원업무
	55.	그 밖의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56.	국내거소자 거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증명 사항
	57.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58.	공무원 호봉 및 근무년수 관리

2 페이지

	59.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60.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지원
	61.	동청사 건립 종합계획 수립
	62.	동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63.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관리

3 페이지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공동체협치과	1.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민·관 협치 활성화 및 지원 업무
	3.	동계획형 주민참여예산
	4.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및 활동 지원
	5.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6.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
	7.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8.	공유경제 및 협동조합 관련 사무
	9.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자원사업 추진
	10.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생산품 또는 서비스 우선구매 장려
	11.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
	12.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1 페이지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 전 총 괄 과	1.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2.	재난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검토·협의
	3.	재난관련 위원회 및 각종 규정 제·개정
	4.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 지원
	5.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6.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
	7.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8.	이재민 관련 업무
	9.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분석
	10.	국가기반시설 재난상황보고
	11.	사회복무요원 관리
	12.	민방위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13.	전시병무업무
	14.	충무계획의 지침작성과 조정통제
	15.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16.	재해 및 일반구호
	17.	재해구호물자의 출납보관 관리
	18.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9.	재난관련 교육 및 훈련 실시
	20.	재난관리기금 운용
	21.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
	22.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2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
	24.	민방위 준비명령
	25.	민방위대 검열

1 페이지

	26.	민방위 시설물 관리
	27.	민방위 편성 및 교육 관리
	28.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
	29.	안전문화운동 전개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1.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32.	안전·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총괄 지휘
	33.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34.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구축·운영 종합계획 수립
	35.	확장서비스(u-Service) 및 지능형서비스 개발·도입
	36.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37.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사무
	38.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39.	CCTV민원(새올, 반상회, 전화, 방문, 진정, 집단민원 등) 처리
	40.	관제인력 채용 및 관리
	41.	CCTV관련 부서·유관기관(시청 관련부서, 경찰, 학교) 업무협의
	42.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43.	여성안심구역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44.	지하안전에 관한 사무
	45.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사업
	46.	재난안전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47.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 페이지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 업 지 원	1.	노동행정의 계획 수립 시행
일 자 리 과	2.	노동단체의 지도 육성
	3.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4.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5.	지방공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공장 신·증설 및 이전승인
		나.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
		다.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에 관한 사무
		라. 입지기준 확인에 관한 사무
		마. 공장 휴·폐업 신고 및 공장등록증명 발급
		바. 불법 공장 단속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
	8.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선정추진
	9.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의 설치운영
	10.	지식재산기반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11.	중소기업창업 관련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무
	12.	민속공예산업 육성계획수립 시행
	13.	공예품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14.	품질경영 촉진에 관한 사무
	15.	불법·불량 공산품 지도단속
	16.	해외 판로개척 계획 수립
		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사무
		나. 해외박람회 참가에 관한 사무
		다. 해외 지사화 사업에 관한 사무
	17.	계량기에 관한 사무
	18.	계량증명업등록에 관한 사무

1 페이지

	19.	산업자원동원에 관한 사무
	20.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1.	광공업에 관한 사무
	22.	공업지역 진흥 관련 사무
	23.	구조고도화 사무
	24.	생태산업단지 조성 사무
	25.	혁신산업단지 사무
	26.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27.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
	28.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단속
	29.	기업&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31.	고용복지+센터 운영
	32.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3.	공공근로사업 추진
	34.	기타 일자리관련 민원처리 상담
	3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36.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추진
	37.	생활임금액 결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8.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39.	일자리창출 및 지원시책 발굴 추진
	40.	일자리사업관련 전산망 운영 관리
	41.	50플러스일자리에 관한 사무

2 페이지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 축 과	1.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2.	건축행정 건실화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신발생 위법건축물(무허가) 정비등에 대한 사무
	4.	항측적출 위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등에 관한 사무
	5.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6.	건축시공 및 지도감독
	7.	건축물의 유지관리
	8.	건축사 지도감독
	9.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10.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
	11.	가설건축물 허가 및 관리
	12.	건축통계 및 자료관리 보관
	13.	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관리
	14.	건축공사장 관리감독
	15.	건축신고의 수리
	1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17.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18.	신고사항의 변경수리
	19.	신고예상 건축물(또는 공작물)의 건축
		가. 착공신고의 수리
	20.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
	2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전환, 합병, 말소, 정정)
	22.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23.	건축물사용승인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
	24.	공용건축물 건축허가 및 협의
	25.	공용건축물(구청사 및 동청사제외) 시설공사 예산 집행
	26.	공용건축물(구청사 및 동청사제외) 신·증축 및 대수선 설계용역
	27.	공용건축물(구청사 및 동청사제외) 공사감독

1 페이지

[별표 2] 보건소 사무분장표(제9조 관련)

건강증진과 사무분장표(제9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 강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증 진 과	2.	복무, 보안관리
	3.	예산운영 및 회계·지출 관리
	4.	차량관리
	5.	물품 및 기록물관리
	6.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각종 보건통계
	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9.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10.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전반
	11.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2.	구강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13.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14.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가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6.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
	18.	취학전 아동실명 예방사업
	19.	기타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페이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94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1.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2.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비상재해대비시설

제4조제3항 후단 중 “철거일로”를 “철거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망실”을 “잃어버리거나”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수지계산서”를 “수입·지출 계산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득하여야”를 “얻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연장하고자 하는 때”를 “연장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득하여야”를 “얻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정”을 “산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익일부터 일할계산하되, 납부 전일까지 연리 15퍼센트”를 “다음 날부터 날 수대로 계산하되, 납부 전날까지 연리 12퍼센트”로 한다.

제11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95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의거”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 규정에 의거”를 “제2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반품요청시”를 “반품요청 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0일 이상”을 “30일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을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쓰레기봉투등 공급 및 대금납입)”을 “(쓰레기봉투등 공급 및 대금납부)”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쓰레기봉투등 공급 및 대금납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판매소로부터 쓰레기봉투 등의 구입을 신청받고, 판매대금을 징수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마감시간 이후의 판매대금은 다음날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작시”를 “제작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를 “20퍼센트”로, “부과일로부터 1월이내”를 “부과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등”을

“쓰레기봉투 등”으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1호서식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2호서식)

2.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대장(별지 제13호서식)

3.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4호서식)

4.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공급대장(별지 15호서식)

5.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불부(별지 제16호서식)

6.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대장(별지 제17호서식)

④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기준

구 분	기 준
일반판매소	일반판매소는 슈퍼, 잡화상 등 인근 주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한다.
구내판매소	1. 구내 판매소는 3층 이상의 고층건물, 공공기관, 대형소매점(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으로서 100㎡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수퍼마켓·편의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참작하여 동일 시설물 내부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임시판매소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 소			
상 호			판 매 소 전화번호	
판매소주소				
판매소구분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 약도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쓰레기봉투판매지정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매소주소			
판매소구분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뒷면)

판매자 준수사항

1. 쓰레기봉투판매지정서 및 표시판을 주민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게첩)하여야 한다.

2.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주민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건전한 상행위를 다하여야 한다.

4. 판매인의 명의(승계)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일 10일 전 판매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또한, 판매인(대표자)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휴·폐업하고자 할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건전사회풍토 조성에 물의를 빚어 계도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접수대장

접수 번호	월일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판매소주소	적합 여부	회시 일자	결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동)

지정번호	상 호	판매소주소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고서

판매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매소 주 소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판매소 주소	
사 유			
휴업일 경우 휴업기간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폐업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 영수증(판매소 교부용)

영 수 증 (공급자 보관용)

판매소번호		상 호	
성 명		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판 매 내 역

종류	수량(매)	단가(원)	금액(원)	종류	수량(매)	단가(원)	금액(원)
				합 계		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

담당자
인수자

영 수 증 (판매소 보관용)

판매소번호		상 호	
성 명		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판 매 내 역

종류	수량(매)	단가(원)	금액(원)	종류	수량(매)	단가(원)	금액(원)
				합 계		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

담당자
인수자

(별지 제8호서식)

세외수입 고지서(은행납부용)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2726

세외수입 고지서 재중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 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OCR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과대상:

납부기한	까지	까지
과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부과내역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OCR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세외수입

납부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OCR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구청보관용) 세외수입

(아침) ※이 줄이는 검증번호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과대상:

납부기한	까지	까지
과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자납부번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봉투 서손·회손 대장

월/일	서손·회손 내역				결 재		
	내 역	제작업체	판매소	처리결과			

(별지 제10호서식)

무 단 투 기 적 발 신 고 서

신 고 자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은 행 명 (계좌번호)	은행 ( )		
위 반 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 반 내 용	
	위반장소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귀 하

첨부: 현장 사진 및 증거물

(별지 제11호서식)

쓰레기봉투등 판매실적 보고

(단위: 매/원)

구 분			수령매수	판매실적		판매잔량	비고
				수 량	금 액		
일반용	총 계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5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1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2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5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10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가정사업계	총 계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3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6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125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총 계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1,000원권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3,000원권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5,000원권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10,000원권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별지 제12호 서식)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월 / 일	인 수 량						공 급 량						잔 량						결 재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																					
/																					
/																					
/																					
/																					
/																					
/																					
/																					
/																					
/																					

(별지 제13호 서식)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대장

월 / 일	판매소		판매량												결재		
	상호	성명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월/일	인수량				공급량				잔량				결재		
	계	30ℓ	60ℓ	125ℓ	계	30ℓ	60ℓ	125ℓ	계	30ℓ	60ℓ	125ℓ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공급대장

월 / 일	신청인		판매량								수거 확인	결재		
	주소	성명	계		30ℓ		60ℓ		125ℓ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불부

월 / 일	신청인			품목	규격	수수료	스티커 관리번호				결재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대장

월 / 일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결 재		
	총인수량	판매량	잔 량	총인수량	판매량	잔 량	총인수량	판매량	잔 량	총인수량	판매량	잔 량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수불부

월/일	지급대상자		총지급수량(ℓ)	지급매수 (매)					수령인
	성 명	세대원수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20. 6. 29.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에 관한 사항
   (붙임 조서와 같음)
4.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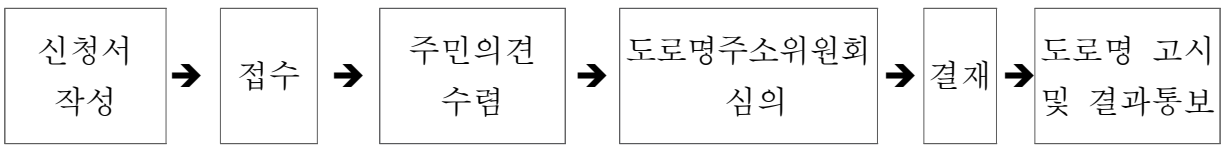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연번	도로 구분	예비도로명	기 점		종 점		제 원		기초간격 (m)	관할 행정구역	도로명 부여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길이(m)	폭(m)			
1	로	금산로	경서동	372-3	경서동	372-3	483	15	20	검암경서동	도로진행방향에 금산이 위치하고 있어 금산로라 명명함
2	길	금산로7번길	경서동	372-3	경서동	372-3	249	15	20	검암경서동	금산로의 시작점으로부터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도로명 부여(안)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1조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20. 6. 29.
2.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조서

연번	내역	도로명	기점		종점		중심선	길이(m)	폭(m)	기초간격(m)	기초번호		관할 행정구역	도로구간 변경 고시일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시작	끝				
1	기존	경명대로263번길	경서동	374-15	경서동	372-6	도면 참조	469	6	20	1	46	검암경서동	2020.06.29.	없음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구간 종점 변경
	변경		경서동	374-15	경서동	372-3		244	6	20	1	24				

○ 도로구간 변경 전·후 도면

변경 전 변경 후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1조에 따라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20. 6. 29.
2.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폐지 조서 및 현황도

연번	도로 위계	도로명	행정 구역	도 로 구 간						도로구간 폐지 사유
				시 점	종 점	기초구간	길이(m)	폭(m)	기초간격(m)	
1	길	경명대로263번길	검암경서동	경서동 374-15	경서동 372-6	32-1 → 32-16	140	6	20	종점 변경에 따른 종속구간 폐지
2	길	경명대로263번길	검암경서동	경서동 374-15	경서동 372-6	40-1 → 40-18	161	6	20	종점 변경에 따른 종속구간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1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303-3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06.2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6-2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78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03-3 (석남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45-4	인천광역시 서구 두밀로 72-18 (대곡동)	20130730	자연부락 명칭 반영	
3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43-4	인천광역시 서구 도곡로 67-7 (대곡동)	20130730	도치울이라고 불리던 옛지명 활용	
4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87-12	인천광역시 서구 도곡로 219 (대곡동)	20130730	도치울이라고 불리던 옛지명 활용	
5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1로 30 (금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첫 번째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	인천광역시 서구 금산로 46 (경서동)	20200629	도로진행방향에 금산이 위치하고 있어 금산로라 명명함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A3가구 1,2획지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	인천광역시 서구 금산로 24 (경서동)	20200629	도로진행방향에 금산이 위치하고 있어 금산로라 명명함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A4가구 1획지
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	인천광역시 서구 금산로 15 (경서동)	20200629	도로진행방향에 금산이 위치하고 있어 금산로라 명명함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A2가구 3획지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5-2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8 (가정동)	20090706	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5-17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181번길 9-7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	인천광역시 서구 금산로7번길 11 (경서동)	20200526	금산로의 시작점으로부터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A1가구 4획지
1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	인천광역시 서구 금산로7번길 23 (경서동)	20200526	금산로의 시작점으로부터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A1가구 7획지
1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	인천광역시 서구 금산로7번길 12 (경서동)	20200526	금산로의 시작점으로부터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A2가구 7획지
1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	인천광역시 서구 금산로7번길 24 (경서동)	20200526	금산로의 시작점으로부터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A2가구 8획지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6-29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47 (신현동)	건물 멸실	20090922	가정동의 동명을 땀. 가정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佳亭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	
2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길 42-3 (가좌동)	건물 멸실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305번길 57 (당하동)	건물 멸실	20171025	드림로 시작지점부터 약3,05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119호

도시관리계획(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6.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Ⅱ. 위 치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800.3	-	2,800.3	-	-	1,800.6	-	1,800.6	-	-		
1	공공청사	동사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일원	1,800.6	-	1,800.6	-	-	1,800.6	-	1,800.6	-	-	'07.11.06	
2	공공청사	순찰 지구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일원	999.7	-	999.7	-	-	-	-	-	-	-		폐지

나)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공공청사	• 시설 폐지 - 999.7㎡ → -㎡ (감 999.7㎡)	• 인천서부경찰서 매입취소에 따라 타용도(사회복지시설)로 변경

2) 사회복지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	-	-	-	999.7	-	999.7	-	-		
1	사회복지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08-4일원	-	-	-	-	-	999.7	-	999.7	-	-		신설

※ 위치는 현재 지번 반영

나)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사회복지시설	• 시설 신설 - 999.7㎡ (증 999.7㎡)	• 다양한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설치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공공청사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2,800.3	1,800.6		2,800.3	-	2,800.3	-	-		1,800.6	-	1,800.6	-	-	
F	F1	1,800.6	1,800.6	가정동 71-133일원	1,800.6	-	1,800.6	-	-	가정동 71-133일원	1,800.6	-	1,800.6	-	-	
	F2	999.7	-	가정동 71-133일원	999.7	-	999.7	-	-	-	-	-	-	-	-	폐지

2)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	999.7		-	-	-	-	-		999.7	-	999.7	-	-	
F	F2	-	999.7	-	-	-	-	-	-	가정동 608-4일원	999.7	-	999.7	-	-	신설

※ 위치는 현재 지번 반영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1) 공공청사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1	F1~F2	F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14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옥상휴게공간설치 권장 • 주변의 공원·녹지와 연계되도록 계획
			형 태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높이 1.2m 이하의 담장 설치 권장 • 주차장의 바닥은 잔디블럭이나 투수성 포장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권장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도면참조)

2) 사회복지시설용지 (신설)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1	F2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11호 노유자시설,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의 지역아동센터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옥상휴게공간설치 권장 • 주변의 공원·녹지와 연계되도록 계획
		형 태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높이 1.2m 이하의 담장 설치 권장 • 주차장의 바닥은 잔디블럭이나 투수성 포장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권장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도면참조)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Ⅳ.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20호

도시관리계획(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476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06.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14-7번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검암2 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검암동 506-1번지 일원	408,082.4	-	408,082.4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08,082.4	-	408,082.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3,195.4	-	203,195.4	49.8	
제2종일반주거지역	73,066.0	-	73,066.0	17.9	
제3종일반주거지역	131,821.0	-	131,821.0	32.3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합 계		9,699	49	1,368	12	5,344	28	2,987	9
일반도로	대로	-	-	-	-	-	-	-	-
	중로	1,533	5	-	-	1,059	3	474	2
	소로	7,864	38	1,261	10	4,260	24	2,343	4
보행자전용도로		302	6	107	2	25	1	170	3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69	18~25	보조 간선	783 (2,330)	대로 1-19 (검암동산19)	검암동71-3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2	171	15	국지 도로	157	중로 2-169	소로 3-23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중로	2	172	15	국지 도로	119	중로 2-169	소로 1-2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145	12	국지 도로	200	중로2-169	소로 2-7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146	12	국지 도로	274	중로2-172	소로 3-23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424	소로 1-25	중로 3-14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7	10~16	국지 도로	123	중로2-169	소로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9	10~16	국지 도로	194	중로 2-169	소로 2-7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98	소로 1-9	중로 3-14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36	중로2-169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34	중로2-169	소로2-8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36	중로2-169	소로2-7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4	10	국지 도로	34	중로2-169	소로2-8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5	10	특수 도로	20	대로1-19	소로1-6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6	10	국지 도로	190	중로 2-172	소로 3-2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7	10	국지 도로	92	소로 1-26	소로 2-9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8	10	특수 도로	87	소로 1-28	소로 2-94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8	8	국지 도로	204	소로1-21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9	8	국지 도로	78	소로2-110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0	8	국지 도로	98	소로2-69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1	8	국지 도로	73	소로2-70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2	8	국지 도로	592	소로2-68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3	8	국지 도로	190	소로2-72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4	8	국지 도로	91	소로1-9	소로2-7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5	8	국지 도로	98	소로2-72	소로2-7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9	8	국지 도로	100	소로 1-9	중로 3-14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2	8	국지 도로	98	소로1-10	소로2-7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83	8~12	국지 도로	138	중로 2-169	중로 3-14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84	8	국지 도로	117	소로2-82	소로2-8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86	8	국지 도로	752	소로 1-6	중로 2-17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4	8	국지 도로	113	소로 2-96	소로 1-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6	8	국지 도로	115	소로 1-27	소로 3-2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8	8	국지 도로	124	소로2-86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9	8	국지 도로	407	소로1-6	소로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0	8	국지 도로	42	소로2-86	소로2-9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1	8	국지 도로	36	소로2-99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2	8	국지 도로	500	소로3-18	소로2-10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3	8	국지 도로	40	소로2-86	소로2-10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4	8	국지 도로	36	소로2-102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5	8	국지 도로	82	소로1-6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6	8	국지 도로	136	소로1-6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10	8	국지 도로	25	대로1-19	소로2-69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626	중로2-169	소로3-2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608	소로1-27	소로3-2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110	소로2-68	소로2-73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34	중로2-169	소로2-86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26	대로1-19	소로3-17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56	대로1-19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1,053	중로1-169	소로1-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	검암3주차장	노외 주차장	검암동 503-8	1,400.4	-	1,400.4	인고93-130 ('93.9.28)	
기정	4	검암4주차장	노외 주차장	검암동 515-1	1,760.2	-	1,760.2	인고93-130 ('93.9.28)	
	계		2개소		3,160.6	-	3,160.6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검여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496	12,475.2	-	12,475.2	인고93-130 ('93.9.28)	
기정	8	삽지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검암동 504-1	2,070.3	-	2,070.3	인고93-130 ('93.9.28)	
기정	9	허암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검암동 534-3	2,977.8	-	2,977.8	인고93-130 ('93.9.28)	
	계		3개소		17,523.3	-	17,523.3		

■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검암2녹지	완충녹지	검암동 492-3	540.7	-	540.7	인고93-130 ('93.9.28)	
기정	3	검암3녹지	완충녹지	검암동 525-4, 525-9	647.4	-	647.4	인고93-130 ('93.9.28)	
기정	4	검암4녹지	완충녹지	검암동 524-1	3,223.3	-	3,223.3	인고93-130 ('93.9.28)	
	계		3개소		4,411.4	-	4,411.4		

■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초등학교	초등학교	검암동 495	10,395.3	-	10,395.3	인고93-130 ('93.9.28)	
기정	6	중 학 교	중 학 교	검암동 497	10,535.0	-	10,535.0	인고93-130 ('93.9.28)	
기정	7	초등학교	초등학교	검암동 536-1	11,791.0	-	11,791.0	인고93-130 ('93.9.28)	
	계		3개소		32,721.3	-	32,721.3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6	파출소	공공청사	검암동 514-7	649.5	감) 649.5	-	인고93-130 ('93.9.28)	
	계		-		649.5	감) 649.5	-		

○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결정 사유
6	파출소	○공공청사 폐지 -면적 : 649.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파출소를 공공청사에서 폐지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

■ 문화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도서관	도서관	검암동 515-1	1,760.2	-	1,760.2	인고2011-188 (2011.8.1.)	
	계		1개소		1,760.2	-	1,760.2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관한 부분(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공공주택용지 (A용도) (변경없음)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11	31,852.7			
30	32,089.3	1	15,740.7	
		2	16,348.6	
31	15,740.8	1	15,740.8	
37	31,485.8	1	15,743.1	
		2	15,742.7	

■ 근린생활시설용지 (B용도) (변경없음)

○ 필지규모 400㎡ 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200㎡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적(㎡)	
1	2,050.4	1	633.8	2
		2-1	803.6	2
		2-2	613.0	2
7	5,617.1	1	1,633.6	-
		2-1	1,322.9	-
		2-2	697.6	-
		3	842.8	-
		4	545.6	-
		5	574.6	-
25	4,389.9	1	350.5	-
		2	500.1	-
		3	2,921.7	-
		4	251.7	-
		5	365.9	-
26	3,705.7	1-1	2,661.7	-
		1-2	1,044.0	-
27	2,415.9	1	1,044.0	-
		2	1,371.9	-
28	2,375.0	1	715.4	
		2-1	390.4	
		2-4	442.0	
		3	209.1	-
		4	618.1	-
57	3,338.7	1-1	476.8	-
		1-2	595.1	-
		2	274.8	-
		3	359.8	-
		4	424.4	-
		5	504.8	-
		6	703.1	-
58	2,983.7	1	426.9	
		3-1	220.8	-
		3-2	205.1	-
		3-3	447.2	-
		4	552.2	-
		5	580.8	-
		6	550.7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59	3,729.7	1	1,494.5	-
		2	724.6	-
		3	768.6	-
		4	345.3	-
		5	396.7	-
60	3,270.8	1	810.0	-
		1-1	637.0	-
		2	653.0	-
		3	357.1	-
		4	257.2	-
		5	556.5	-
61	3,051.7	1	592.1	-
		2	189.6	-
		4	239.4	-
		5	477.3	-
		6	250.1	-
		7	662.2	-
		8	641.0	-
68	3,738.0	1	121.9	
		2	1,351.0	
		4	173.8	-
		5-2	371.2	-
		5-3	348.6	-
		6	199.3	-
		7	527.6	-
		8	339.4	-
		9	305.2	-
69	2,5550.	1	229.7	-
		2	335.1	-
		3-1	796.0	-
		3-2	788.0	-
		6	143.6	-
		7	262.6	-

■ 단독주택용지(C1용도) (변경없음)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2	3,157.9	1	203.7	-
		2	203.7	-
		3	196.3	-
		4-1	370.1	-
		4-2	323.0	-
		4-3	316.0	-
		4-4	269.1	-
		4-5	282.8	-
		4-6	303.1	-
		5	428.1	-
		6	262.0	-
3	2,861.6	1	263.6	-
		2	294.5	-
		3-1	442.3	-
		3-2	442.4	-
		3-3	232.8	-
		3-4	232.9	-
		4-1	345.6	-
		4-2	607.5	-
8	3,194.5	1-1	304.2	-
		1-2	300.0	-
		2-1	457.3	-
		2-2	457.2	-
		3-1	265.3	-
		3-2	314.3	-
		3-3	403.2	-
		3-4	596.3	-
		4	96.7	-
9	3,330.9	1	594.0	-
		8-1	211.8	-
		8-4	218.2	-
		9	123.8	-
		10	222.2	-
		11	267.5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10	1,754.2	3	193.3	-
		4	174.9	-
		7-2	206.3	-
19	3,188.4	4	443.2	-
		5-1	408.0	-
		5-2	406.9	-
		6	758.5	-
20	4,985.7	1-1	321.2	-
		1-2	321.7	-
		1-3	321.6	-
		2-1	276.4	-
		2-2	276.4	-
		4	195.0	-
		5-1	329.6	-
		5-2	329.7	-
		6-1	284.4	-
		6-2	284.3	-
		7-1	294.9	-
		7-2	294.8	-
		8	241.3	-
		9	363.0	-
		10	398.9	-
		11	452.5	2
21	3,737.8	3	404.7	-
		4	807.5	-
43	2,576.5	2-1	644	-
45	1,999.7	3	1,158.4	-
		4	295.6	-
		5	275.9	-
46	5,522.2	1	723.1	-
		2-1	845.8	-
		2-2	799.2	-
		3	263.2	-
		4-1	574.0	-
		4-2	708.4	-
		5-1	768.2	-
		5-2	540.3	2
		5-3	300.0	-
47	2,995.8	2	440.5	-
		3	434.6	-
		4	505.5	-
		5	646.3	-
		6-2	270.4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49	2,288.6	1-1	684.4	-
		1-2	555.0	-
		1-3	555.0	-
		2	494.2	2
51	4,478.8	1	266.0	-
		2	212.0	-
		3-1	226.4	-
		3-2	226.5	-
		4-1	218.4	-
		4-2	206.0	-
		4-3	217.5	-
		4-4	212.7	-
		5	295.6	-
		6	158.1	-
		7	205.6	-
		9-1	291.7	-
		9-2	333.5	-
		9-3	196.5	-
		9-4	202.8	-
		9-5	214.0	-
52	4,696.6	1-3	248.3	-
		2	206.9	-
		3	272.4	-
		5	456.8	-
		6-1	283.7	-
		6-2	260.2	-
		6-3	260.2	-
		7-1	256.9	-
		7-2	250.3	-
		8	200.6	-
		9	442.9	-
		10-1	248.5	-
		10-2	248.1	-
		10-3	304.0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53	4,410.8	7	313.4	-
		8-1	271.9	-
		8-2	272.0	-
		9	386.0	-
		10	385.9	-
		11	361.7	-
54	4,122.3	2	117.6	-
		3	321.9	-
		6-1	233.0	-
		6-2	233.3	-
		7	344.5	-
55	4,975.1	2-1	376.0	-
		2-2	375.9	-
		3	171.0	-
		4	297.3	-
		5	251.2	-
		6	515.1	-
		7	246.9	-
		8	312.4	-
		9	140.3	-
56	4,518.5	1-1	422.5	-
		1-2	423.0	-
		2	140.9	공동건축
		3	401.2	
		4	265.8	-
		5	323.6	-
		6	203.8	-
		7	488.5	공동건축
		8	220.2	
		9	262.1	-
		12	457.9	2
		13	214.6	-
62	4,958.1	1	385.5	-
		2	364.0	-
		3-1-1	297.5	-
		3-1-2	297.4	-
		3-2-1	292.6	-
		3-2-2	292.6	-
		3-2-3	584.5	-
		6	288.5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63	3,741.5	2-1	405.0	지적확인
		2-2	378.0	지적확인
		3	198.2	-
		4	490.7	-
		5	404.9	-
		6-1	214.6	-
		6-2	212.2	-
		6-3	219.4	-
64	4,219.0	1-1	359.2	-
		1-2	264.7	-
		2-1	334.4	-
		2-2	334.5	-
		2-3	334.5	-
		3	248.7	-
		4	147.6	-
		5-1	370.1	-
		5-2	432.3	-
		6	147.5	-
		7-1	369.8	-
		7-2	363.7	-
		8-1	229.0	-
		8-2	283.0	-
65	4,997.5	1-2	243.0	-
		2-2	336.2	-
		6-3	462.4	-
		7	215.7	-
		8	310.7	-
		9-1	265.7	-
		9-2	265.6	-
66	5,293.5	1-1	295.5	-
		1-2	218.5	-
		2-1	238.1	-
		2-2	238.0	-
		3-1	369.8	-
		3-2	280.9	-
		3-3	314.0	-
		5	176.0	-
		6	310.8	-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67	6,150.9	1	334.8	-
		2	384.1	-
		3	260.6	-
		4-1	238.1	-
		4-2	238.2	-
		4-3	238.2	-
		5	433.8	2
		6	337.1	-
		8	352.3	-
		9	449.1	-
		10	721.5	3
		11	581.6	공동건축
		12	186.1	
		13-1	486.0	-
		13-2	454.8	-
70	2,953.2	1-2	237.0	-
		1-3	237.0	-
		2	335.8	-
		3-1	394.2	-
		3-2	277.5	-
		4-1	329.8	-
		4-2	349.7	-
		5	340.1	-

■ 단독주택용지(C2용도) (변경없음)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9	3,330.9	2	211.9	-
		3	186.6	-
		4	191.6	-
		5	267.1	-
		6	267.5	-
		7	152.6	-
		8-1	200.1	-
		8-2	213.2	-
10	1,754.2	1	326.5	-
		2	151.2	-
		5	174.9	-
		6	320.8	-
		7-1	206.3	-
18	2,816.5	2	1,088.8	-
		3	223.7	-
		4	353.2	-
		5-1	176.7	-
		5-2	176.3	-
19	3,188.4	2-1	299.4	-
43	2,576.5	2-4	644.1	-
		2-5	322.2	-
45	1,999.7	2	269.8	-
47	2,995.8	1	438.1	-
		6-1	260.4	-
49	2,288.6	1-1	684.4	-
		1-2	555.0	-
		1-3	555.0	-
		2	494.2	2
51	4,478.8	10	795.5	-
52	4,696.6	1-1	250.6	-
		1-2	506.2	-
53	4,410.8	1	387.6	-
		2	317.6	-
		3-1	231.5	-
		3-2	345.8	-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53	4,410.8	4	243.3	-
		5	236.0	-
		6	658.1	-
54	4,122.3	1	622.3	-
		4	580.5	-
		5	502.7	-
		8-1	677.6	-
		8-2	488.2	-
55	4,975.1	1	1,193.1	-
		10	192.7	-
		11	407.6	-
		12	495.1	-
56	4,518.5	11	694.3	-
62	4,958.1	4	539.3	-
		5	618.3	-
		7-1	498.9	-
		7-2	499.0	-
63	3,741.5	1-1	587.4	-
		1-2	631.1	-
65	4,997.5	1-1	791.5	-
		2-1	438.0	-
		3	149.7	-
		4	460.5	-
		5	542.5	-
		6-1	257.9	-
		6-2	258.1	-
66	5,293.5	1-3	513.9	2
		2-3	237.3	-
		2-4	237.2	-
		2-5	237.1	-
		7	143.8	-
		8	387.1	-
		9	298.6	-
		10-1	264.5	-
		10-2	267.9	-
		10-3	264.5	-
67	6,150.9	13-3	454.6	-
70	2,953.2	1-1	452.1	-

■ 단독주택용지(C3용도) (변경없음)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18	2,816.5	1	797.8	-
19	3,188.4	2-2	299.4	-
		2-3	299.5	-
		3	273.5	-
21	3,737.8	1	1,960.3	-
		2	565.3	-
43	2,576.5	2-2	644.1	-
		2-3	644.1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A용도)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주택지 A용도	11,30,31,37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A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A 불허용도
		건 폐 율		• 2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 이		• 19층이하
		형 태		• 별표2의 A
		배 치		• 별표3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 축 선		• 별표3의 A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생활시설용지 B용도	1(1, 2-1, 2-2), 7,25,26,27,28,57, 58,59,60,61, 68(524-2~12), 69(525-1~8) 1(492-1~2, 5~7)	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B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B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 이		• 5층이하
		형 태		• 별표2의 B
		배 치		• 별표3의 B
		색 채		• 별표4의 B
		건 축 선		• 별표3의 B

■ 단독주택용지(C용도) : 8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주택용지 C1용도	2(1-6), 3(1-3,4-1-2), 8(1-1-2,2,3-1-5,4), 9(1,8-12), 10(2-4), 19(4-6), 20(1-2,4-11), 21(3-4), 43(2), 45(3-5), 46(1-5), 47(2-5), 51(1-8,9-1-5), 52(2-9,10-1-3), 53(7-11),54(2-3,6-1-2,7), 55(2-9),56(1-10,12-13), 62(1-2,3-1-2,6),63(2-6), 64(1,2-1-4,3-6,7-1-2,8), 65(6-9),66(2-1-2,3,5-6), 67(1-3,4-1-3,5-12), 69(1,2-3,5-7),70(2-5)	용도	허용 용도	• 별표1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 용도	• 별표1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완화규정적용)
		형 태		• 별표2의 C1
		배 치		• 별표3의 C1
		색 채		• 별표4의 C
		건 축 선		-

■ 단독주택용지(C2용도) : 10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주택용지 C2용도	9(2~8),10(1,5~7), 18(2~4,5-1~2), 43(2),49(1~2),45(2), 47(1,6),51(10),52(1), 53(1~6),54(1,4~5,8), 55(1,10~12),56(11), 62(4~5,7),63(1), 65(1~6), 66(1,2-3~5,7~10), 67(13),70(1)	용도	권장용도	• 별표1의 C2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C2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완화규정적용)
		형 태		• 별표2의 C2
		배 치		• 별표3의 C2
		색 채		• 별표4의 C2
		건 축 선		-

■ 단독주택용지(C3용도) : 12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주택용지 C3용도	18(1), 19(2~3),21(1~2), 43(2)	용도	권장 용도	• 별표1의 C3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 용도	• 별표1의 C3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산정 에서 제외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완화규정적용)
		형 태		• 별표2의 C3
		배 치		• 별표3의 C3
		색 채		• 별표4의 C
		건 축 선		-

■ 교육시설용지(D용도)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시설용지 D용도	4, 6, 45(1)	용 도	• 학교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률	• 150%이하
		높 이	• 5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 공공청사용지(E용도) (폐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청사용지 E용도	57(7)	용 도	• 공공청사
		건 폐 율	• 5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 공공업무용지(E용도) (신설)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용지 E용도	57(7)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노유자시설
		건 폐 율	• 5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폐지에 따른 공공청사용지(E용도) 명칭변경 및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 공공청사 폐지에 따른 공공청사용지(E용도) 명칭 및 허용용도 변경

■ 주차장용지(F용도)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용지 F용도	10(8) 43(1)	용 도	• 주차장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지평식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별표3의 C

(3)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계획 : (별표참조)

【별표1】건축물 용도 분류표(변경)

【별표2】건축물의 형태 분류표(변경없음)

【별표3】건축물의 배치 분류표(변경없음)

【별표4】건축물의 색채 분류표(변경없음)

【별표5】차량동선, 주차시설, 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별표6】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별표7】옥외광고물 설치기준(변경없음)

【별표8】기타사항(변경없음)

【별표1】건축물 용도분류표(변경)

○ 기정

구분	A	B	C1	C2	C3	D ~ G
지정용도	○주택법에 따른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	○학교(D) ○공공청사(E) ○주차장(F) ○도서관(G)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 및 확성장치 없는 것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학교 중 유치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판매소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다중주택제외) - 공동주택(아파트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 무도학원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일반음식점(단,1층에 한함) ・종교집회장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다중주택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 무도학원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일반음식점(단,1층에 한함) ・종교집회장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학교 중 유치원 ・도서관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다중주택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 무도학원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일반음식점(단,1층에 한함) ・종교집회장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학교 중 유치원 ・도서관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 12m이상도로에 12m 접함)	-
불허용도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주1) - 삭제 -

주2)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주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

주4)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붕의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1층의 높이를 산정한다)

주5)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 형태의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주6) 가설건축물 제한(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

주7) 권장용도(C1,C2,C3)는 도로폭원에 따라 완화하고 있으나 도로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하는 획지)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주8) 획지분할시 전면이 기준에 접한 도로 폭보다 적은 도로에 접할 경우, 좁은 도로변의 용도 적용

○ 변경

구분	A	B	C1	C2	C3	D ~ G
지정 용도	○주택법에 따른 - 공동주택 중아파트	-	-	-	-	○ 학교(D) ○ 공공업무 용도(E) ○ 주차장(F) ○ 도서관(G)
권장 용도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 및 확성장치 없는 것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학교 중 유치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석유 및 액화가스판매소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다중주택제외) - 공동주택(아파트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일반음식점(단,1층에 한함) ・종교집회장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다중주택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일반음식점(단,1층에 한함) ・종교집회장 -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학교 중 유치원 ・도서관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다중주택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일반음식점(단,1층에 한함) ・종교집회장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학교 중 유치원 ・도서관 -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 12m이상 도로에 12m 접함)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 ○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주1) - 삭제 -

주2)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주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

주4)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붕의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1층의 높이를 산정한다)

주5)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 형태의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주6) 가설건축물 제한(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

주7) 권장용도(C1,C2,C3)는 도로폭원에 따라 완화하고 있으나 도로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하는 획지)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주8) 획지분할시 전면이 기준에 접한 도로 폭보다 적은 도로에 접할 경우, 좁은 도로변의 용도 적용

【별표2】건축물의 형태 분류표 (변경없음)

용 도	도면표시	건 축 물 의 형 태
공동주택용지(A)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린생활시설용지(B)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옥상의 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15㎝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단독주택용지(C1, C2, C3)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단, 다른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옥상의 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15㎝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0m로 제한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별표3】건축물의 배치 분류표 (변경없음)

<table>
<tr><th>용도</th><th>도면
표시</th><th>건 축 물 의 배 치</th></tr>
<tr><td>공동
주택
용지
(A)</td><td>-</td><td>○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 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중로 2-169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담장 설치 : 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 설치
-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높이 1.2m 이하) 설치를 권장
- 공원 및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담장(높이 1m이하) 설치
- 동일 블록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
○담장설치불허구간 :
-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담장을 없애고 같은 동네로서의 공간형성)
- 건축한계선 지정 구역(담장 설치를 불허하여 일반인의 활용 유도)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토록 권장</td></tr>
<tr><td>근린
생활
시설
용지
(B)</td><td>-</td><td>○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중로 2-169호선, 중로 2-171호선, 중로 2-172호선, 중로 3-145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0.6m이하의 식수대, 높이 1.0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
- 간선가로변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td></tr>
<tr><td rowspan="3">단독
주택
용지
(C1,
C2,
C3)</td><td rowspan="3">-</td><td>○중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2m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 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td></tr>
<tr><td>○획지분할에 관한 사항
- 전면이 8m 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1적용
- 전면이 10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2적용
- 전면이 12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3적용</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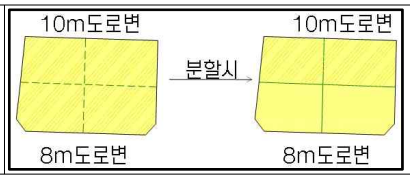
</td></tr>
<tr><td colspan="2">○권장용도에 관한 사항
- 도로 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한 획지에 대한 기준은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td></tr>
</table>

【별표4】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변경없음)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색 채
공동 주택 용지 (A)	-	○검암 2구역 북측 및 서측은 Landmark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 사용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주변은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
근린 생활 시설 용지 (B)	-	○주 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단, 강조색은 가능)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단독 주택 용지 (C)	-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검정색 계통의 벽돌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 색채계획목표

○색채계획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로서 주민들에게 심미감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느끼도록 하는 요소임

-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색채 사용
- 인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색채감의 조성
- 구역내의 변화로운 색채 형성으로 식별성 및 미관의 개선
- 대상주민 뿐만 아니라 도로를 통해 보여지는 가로경관의 시각효과 개선

■ 색채의 분류

○자율적인 색채계획을 최대한 보장하되 색채사용의 범위를 명시하여 색채적용의 융통성을 부여토록 함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 주조색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 ~ 30%를 차지
- 강조색 :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5】 차량동선.주차시설.단지내시설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기 타 사 항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1)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 2-169호선변의 주차통로를 제외한 구간 -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30m이내의 구간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10m이내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2) 주차통로 - 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가능한 억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획지1개소당 1개소의 주차통로 설치를 유도하며 1개소당 통로폭은 최소3m이상 확보 (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선정) ○주차에 관한 계획 -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 - 근린생활 용지내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1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권장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기본방향 - 보행활동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익시설 설치 -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별표6】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용 도	도면 표시	도 시 계 획 도 로	
도시계획도로	-	가 로 시설물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설치 ○시설 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치
		식 재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 가로망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가로수는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띄어서 식재하며, 식재간격은 6~8m을 기준으로 함
		포 장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보 도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 포장구획을 소 단위로하여 친근감 유지 - 재료는 소형고압블럭 및 일반콘크리트블럭 등의 재료 사용 유도 ○연 석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 명 시 설	○가로등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조절 - 조명등의 설치타입은 주변여건에 적합되도록 선택 ○보행등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
		기 타 사 항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별표7】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변경없음)

-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별표8】기타사항 (변경없음)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2-1호선외2개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0-411호(2010.12.2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시설명: 소로2-1호선 외 2개노선, 사업명: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6.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준공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72-1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소로2-1호선, 소로2-2호선, 소로3-1호선)

○ 명칭: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없음)

종 류	명 칭	규 모	비 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호선	L＝215m, B＝8m, A＝2,226㎡	2단계
〃	소로2류2호선	L＝100m, B＝8m, A＝914㎡	1단계
〃	소로3류1호선	L＝125m, B＝6m, A＝1,118㎡	2단계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2011. 5. 23. ~ 2020. 06. 30.

○ (변경) 2011. 5. 23. ~ 2020.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사업명: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도로개설공사(소2-1호선)

연번	동명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 계				2,252	2,226						
1	경서동	272-11	전	11	11	인천광역시 서구					
2	경서동	273-1	전	28	28	인천광역시 서구					
3	경서동	273-2	전	6	6	인천광역시 서구					
4	경서동	274-1	전	10	10	인천광역시 서구					
5	경서동	274-2	대	12	12	인천광역시 서구					
6	경서동	274-3	전	20	20	인천광역시 서구					
7	경서동	274-5	대	30	30	인천광역시 서구					
8	경서동	산158-2	임	60	60	인천광역시 서구					
9	경서동	산158-3	임	499	499	인천광역시 서구					
10	경서동	산160-3	임	5	5	인천광역시 서구					
11	경서동	산160-5	임	140	140	인천광역시 서구					
12	경서동	산160-6	임	476	476	인천광역시 서구					
13	경서동	산163-6	임	86	60	인천광역시 서구					
14	경서동	산163-7	임	137	137	인천광역시 서구					
15	경서동	산163-8	임	142	142	인천광역시 서구					
16	경서동	산163-9	임	220	220	인천광역시 서구					
17	경서동	산171-16	임	39	39	인천광역시 서구					
18	경서동	산171-17	임	127	127	인천광역시 서구					
19	경서동	산171-18	임	102	102	인천광역시 서구					
20	경서동	산173-4	임	102	102	인천광역시 서구					

□ 사업명: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도로개설공사(소2-2호선)

연번	동명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 계				974	914						
1	경서동	산163-6	임	86	26	인천광역시 서구					
2	경서동	산163-10	임	203	203	인천광역시 서구					
3	경서동	산165-14	임	73	73	인천광역시 서구					
4	경서동	산165-15	임	612	612	인천광역시 서구					

□ 사업명: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도로개설공사(소3-1호선)

연번	동명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 계				1,118	1,118						
1	경서동	283-2	전	52	52	인천광역시 서구					
2	경서동	283-3	전	67	67	인천광역시 서구					
3	경서동	284	전	32	32	인천광역시 서구					
4	경서동	319-4	도	12	12	국토교통부					
5	경서동	319-5	도	23	23	국토교통부					
6	경서동	321	전	3	3	인천광역시 서구					
7	경서동	321-6	전	69	69	인천광역시 서구					
8	경서동	321-7	전	3	3	인천광역시 서구					
9	경서동	산151-3	임	21	21	인천광역시 서구					
10	경서동	산151-4	임	20	20	인천광역시 서구					
11	경서동	산151-5	임	19	19	인천광역시 서구					
12	경서동	산151-6	임	87	87	인천광역시 서구					
13	경서동	산152-3	임	114	114	인천광역시 서구					
14	경서동	산152-4	임	156	156	인천광역시 서구					
15	경서동	산154-5	임	60	60	인천광역시 서구					
16	경서동	산154-6	임	154	154	인천광역시 서구					
17	경서동	산157-3	임	36	36	인천광역시 서구					
18	경서동	산157-4	임	39	39	인천광역시 서구					
19	경서동	산157-5	임	76	76	인천광역시 서구					
20	경서동	산157-6	임	75	75	인천광역시 서구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변경없음)

□ 사업명 :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도로개설공사

연번	동명	지번	지목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	-	-	-	-	-	-	-	-	-	보상 및 철거 완료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022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상반기 대부업 지도 및 단속 결과 소재확인 불가)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6.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 명칭 :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대상

구분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대부업	2017-인천서구-0010	주식회사 제이에스금융대부	송○○ 외 1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 8-22, 미라클프라자 202호 (청라동)

3. 공고 기간 : 2020. 6. 29. ~ 2020. 7. 30.

4. 공고 내용

가. 영업소 소재불명 및 연락이 불가능한 대부업자의 소재확인을 위하여 공고를 하오니 해당업체는 본 공고기간 만료 전까지 소재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가 없을 경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중개)업 등록이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4조)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에너지과(☎032-560-4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 - 10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6.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현재 실정과 조례에 맞게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원가입 절차 및 연령에 따른 본인확인 구비 서류를 개정하여 현행화 하도록 함(안 제4조)

○ 변상항목 범위 확대(도서→자료) 및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된 정보 파기(안 제6조)

○ 이용자 준수사항 적용범위 확대 및 구체적 사항 명시(안 제7조)

○ 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 사유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교육혁신과, 전화 560-5754, 팩스 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현재 실정과 조례에 맞게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원가입 절차 및 연령에 따른 본인확인 구비 서류를 개정하여 현행화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변상항목 확대(도서→자료) 및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 파기 (안 제6조)

다. 이용자 준수사항 적용범위 확대 및 구체적 사항 명시 (안 제7조)

라. 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 사유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 공문 별도 시행(성별영향평가)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과, 분실·훼손 등으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을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거나”로, “회원가입신청서다음”을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학생증”을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현주소 미기재 신분증 제시자, 미성년자의 경우”를 “현주소 미기재 신분증 제시자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도서를”을 “자료를 오손·훼손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된 회원의 정보는 즉시 파기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 파기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열람실”을 “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를 “이용자가 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인 명의의 회원증을 사용한다.

6. 도서관 내에서 성착취물, 도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며, 도서관 내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 및 동영상을 내려받고 설치하거나, 악성코드를 배포하지 않는다.

7.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지 않으며,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지 않는다.

8. 절도, 폭력, 협박, 무단침입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대출정지) 대출받은 도서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반납일부터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은 시간당 단위로 한다.

③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상업적 행위, 과외 및 영리행위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4. 친목회, 향우회, 송년회, 졸업식 등 일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타”를 “다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제19조 중 “위탁관리시”를 “위탁관리 시”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20조 중 “규칙 시행에 관하여”를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_앞면]

도서관회원가입 신청서

회원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남/여)
	주소		
	학교 또는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절 취 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같이 인천광역시 서구구립도서관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00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2. 현주소 미기재 신분증 제시자, 미성년자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대출자번호		카드수령확인	

[별지 제1호서식_뒷면]

유의사항

1.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4.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리 대출은 불가합니다.
5.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 시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합니다.
6. 대출한 자료가 연체되었을 경우 연체된 일수 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7. **온라인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책이음 서비스 등 서비스에 제한이 있습니다.**

서구구립도서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개인식별,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자택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제2연락처)

나. 선택항목 : e-mail, e-mail 수신여부, SMS 수신 여부, 법정대리인(이름, 전화번호), 근무지(주소, 전화, 근무처, 부서명), 학교명, 학년, 반,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보유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정보주체의 동의) / 나. 보유기간 : 2년

4. 회원가입에 대하여 <※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용약관” 항목”※>을 준용합니다. 또한 약관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 약관 동의 거부 시 회원 가입이 불가합니다.

○ 회원약관 동의(필수)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필수)	동의		미동의	
○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동의		미동의	
○ 도서연체안내 등 SMS 발송 수신(선택)	동의		미동의	

※ 위 내용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용약관을 준용하는 내용이며, 홈페이지 이용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		미동의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	동의		미동의	

[별지 제3호서식_앞면]

(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도서관에서 작성
단 체 명 (단체/개인)		대 표 자 (신청자)	
사용장소	□ 배움터1 □ 배움터2 □ 어울림터	연 락 처	
사용일시	년 월 일 : ~ :	이용인원	남 명 여 명
사용목적			
사 용 료			

서구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 동의서 사항을 확인했으며, 상기와 같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도서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 : **도서관 시설 사용에 따른 연락 및 확인, 이용자 성별 통계 구축**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단체명, 성명, 연락처, 성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시설 사용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 의 □ 동의안함

[별지 제3호서식_뒷면]

(　　)도서관 시설 사용 동의서

본인은 서구 구립도서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사용규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사전 신청 정보와 실제 사용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특히 영리, 종교, 정치적 목적 등 시설사용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즉시 취소된다.
□ 시설 내 기자재를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 이용자 부주의로 집기류, 장비 등을 훼손할 경우 이를 즉시 변상한다.
□ 시설 내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원상태로 복구한다.
□ 시설 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흡연·음주를 하지 않는다.
□ 시설 사용 인원은 사용 장소 적정 인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 사용 예약 후 사전 취소 없이 임의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않는다.
□ 이용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고, 도서관에 법적(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한다.
□ 사용 공간 특성에 맞게 사용할 것이며 다른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소음 발생, 쓰레기 정리 등)
□ 이용시간 종료 5분전 정리 후 퇴실하며, 이용시간을 준수한다.

위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 동의서에 동의하며, 미 준수 시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 대표의 동의는 이용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별지 제4호서식]

(　　)도서관 시설물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 :　　)

단체명			
대표자(신청자)		연락처	
사용장소	□ 배움터1 □ 배움터2 □ 어울림터		
사용일시	. . . : ~ . . . :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용료	일금　　원(₩　　)		
허가조건	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물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도서관)

[별지 제5호서식]

위 탁 자 료 목 록

연번	자 료 명	저 자	출판사	수량	위탁자 (성명/기관명)	위탁 구분 (개인/기관)	비고

[별지 제6호서식]

도 서 기 증 목 록

연번	자 료 명	저 자	출판사	수량	기증자 (성명/기관명)	기증 구분 (개인/기관)	비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회원가입)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분실・훼손 등으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가입) ---------- ----------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거나 ----------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현주소 미기재 신분증 제시자, 미성년자의 경우) 1부	1.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현주소 미기재 신분증 제시자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회원의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취소 등) ①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서를 분실하고도 3개월 이내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료를 오손・훼손하거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1호에 의해 취소된 회원은 즉시 제적하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경과 후 제적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된 회원의 정보는 즉시 파기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 파기한다.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열람실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한다.	1. 본인 명의의 회원증을 사용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열람실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수면 등 타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도서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5. ---------- 다른 사람----------.
6. 무단 집회 및 면회를 할 수 없다.	6. 도서관 내에서 성착취물, 도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며, 도서관 내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 및 동영상을 내려 받고 설치하거나, 악성코드를 배포하지 않는다.
<신 설>	7.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지 않으며,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지 않는다.
<신 설>	8. 절도, 폭력, 협박, 무단침입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	② 이용자가 제1항을 ----------

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신 설>	③ 공무원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8조(관내대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8조(관내대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수행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2. ----------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대출정지) 대출받은 도서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을 정지한다.	제9조(대출정지) 대출받은 도서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반납일부터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1. 1개월 미만 연체한 사람은 연체한 일수	
2.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연체한 사람은 3개월	
3.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한 사람은 6개월	
4.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1년	
제11조(관외대출 제한) ①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11조(관외대출 제한) ① ----------.
1. 참고도서 및 비본자료	<삭 제>
2. 비도서 중 원본자료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생 략)	제13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은 시간당 단위로 한다.
<신 설>	③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상업적 행위, 과외 및 영리행위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4. 친목회, 향우회, 송년회, 졸업식 등 일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4조(자료 복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4조(자료 복사의 제한) ---------- 어느 하나----------.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제18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 다른 ---------- 따라 ----------. ---------- 명확하게 기록----------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자체운영규정)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체운영규정) ---------- ---- 위탁관리 시 ---------- ---------- ---------- 받아 ---------- -----.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운영세칙) --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 정할 수 있다. .

의 견 수 렴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